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-92

제출년월일 : 2022. 9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‘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’ 관련 조문 삭제

나. 상위법령 반복내용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및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2)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14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5. 26. ~ 6. 1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06.2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센터의 설치 및 운영)"을 "(설치 및 운영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비영리법인 또는"을 "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조제7호 중 "사업"을 "사항"으로 한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

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의 제목 "(지도·감독의 의무)"를 "(지도·점검의 의무)"로 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지도·점검의 의무)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조직 및 직원)”을 “(조직 및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”을 “사업수행”으로, “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”를 “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3조 제2항”을 “센터를 제3조제2항”으로, “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종사자”를 “직원을 제2항의”로, “직원을 공개채용하고”를 “공개채용하고”로 한다.

② 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, 보수·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.

제9조의 제목 “(이용료 등의 징수)”를 “(사용료의 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하는 각종”을 “각종”으로, “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”를 “실시할 때 사용료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그 상한은 별표와 같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”를 “사용료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5조 제1항”을 “센터를 제3조제2항”으로, “경우 징수한 이용료”를 “경우, 징수한 사용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1. 위기청소년

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 중 “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, 긴급구조 등에 의한”을 “업무
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"으로 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운영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검사 사용료 상한

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내 용	사용료
상 담 (1회 기준)	개인상담(청소년)	6,000
	개인상담(부모)	12,000
	개인상담(청소년 및 부모)	12,000
	미술상담	42,000
심리검사 (1회 기준)	성격유형검사 (MBTI, MMTIC)	12,000
	진로검사(HOLLAND)	12,000
	다차원 및 다요인 인성검사	12,000
	다면적 인성검사 (MMPI, MMPI-A)	18,000
	문장완성검사(SCT)	6,000

※ 사용료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부과·징수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・긴급구조・자활・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2. “청소년복지”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・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・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 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 4. “위기청소년”이란 가정 문제	<삭 제>

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	
제3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3조(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----------.
제4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제4조(기능) ----------.
1.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지원	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항
2. 상담·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	<삭 제>
3. 상담 자원봉사자와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	<삭 제>
4.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	<삭 제>
5. 청소년 폭력·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 지원, 일시보호 지원	<삭 제>

6.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(自活) 및 재활(再活) 지원	<삭 제>
7.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7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사항
제5조(위탁 및 운영비의 지원)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경우에 예산·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「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<삭 제>
제6조(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.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	<삭 제>

3. 관련법규 위반, 회계 부정,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.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.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
제7조(지도·감독의 의무)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지도·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7조(지도·점검의 의무)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제8조(조직 및 직원) ① 센터는 센터의 장과 상담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,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.	제8조(조직 및 구성) ① ---------- 사업수행---------- ----------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각 팀에 ----------.

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고, 그 밖에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	② 센터의 설치·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, 보수·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.
③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,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③ 센터를 제3조제2항---------- 직원을 제2항의 ---------- 공개채용하고----------. ----------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이용료 등의 징수) ① 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	제9조(사용료의 징수 등) ① ---------- -- 각종 ---------- 실시할 때 사용료---------- ---------- 있으며, 그 상한은 별표와 같다.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사용료---------- -----.

1.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위기청소년	1. 위기청소년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징수한 이용료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,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.	③ 센터를 제3조제2항---------- 경우, 징수한 사용료---------- ----------.
④ 이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.	<삭 제>
⑤ 센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. 이하 “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”이라 한다.)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. 다만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.	<삭 제>
제10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)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	<삭 제>

호하고,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구, 공공기관, 청소년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		
제11조(운영위원회) ① 구청장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.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, 위원의	<삭 제>	

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
제12조(수당 등)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<삭 제>
제13조(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) 센터의 직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, 긴급구조 등에 의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	제13조(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) ----------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----------. <삭 제>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
<신 설>	제15조(운영 지원)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[별표 1]

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검사 이용료 상한

(제9조 제4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내 용	이용료
상 담 (1회 기준)	개인상담(청소년)	6,000
	개인상담(부모)	12,000
	개인상담(청소년 및 부모)	12,000
	미술상담	42,000
심리검사 (1회 기준)	성격유형검사 (MBTI, MMTIC)	12,000
	진로검사(HOLLAND)	12,000
	다차원 및 다요인 인성검사	12,000
	다면적 인성검사 (MMPI, MMPI-A)	18,000
	문장완성검사(SCT)	6,000

※ 이용료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부과·징수

[별표]

[별표]

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및 검사 사용료 상한

(제9조제1항 관련)

(단위:원)

구 분	내 용	사용료
상 담 (1회 기준)	개인상담(청소년)	6,000
	개인상담(부모)	12,000
	개인상담(청소년 및 부모)	12,000
	미술상담	42,000
심리검사 (1회 기준)	성격유형검사 (MBTI, MMTIC)	12,000
	진로검사(HOLLAND)	12,000
	다차원 및 다요인 인성검사	12,000
	다면적 인성검사 (MMPI, MMPI-A)	18,000
	문장완성검사(SCT)	6,000

※ 사용료 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부과·징수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개정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김소라
연 락 처	02-3153-8984